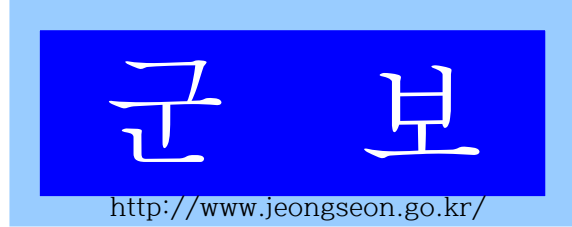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601호 2022. 7. 20. (수)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2-92호 정선 군계획시설(주차장:노외주차장) 실시계획 인가 고시...1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2-859호 제282회 정선군의회(임시회) 부의 안건 공고.....4
- 정선군 공고 제2022-860호 정선군 군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5
- 정선군 공고 제2022-863호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1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2-92호

정선 군계획시설(주차장:노외주차장)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정선군 고시 제2020-290호(2020. 12. 24.)로 결정 고시된 정선 군계획시설(주차장:노외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5일

정 선 군 수

2. 위 치 : 정선읍 애산리 415-8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정선 군계획시설(주차장:노외주차장) 사업

나. 명 칭 : 정선 군계획시설(주차장:노외주차장) 조성사업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비고
	세부시설명	면적	금회시행	
주차장	노외주차장	2,282㎡	2,282㎡	

5. 사업시행자 및 주소

가. 성 명 : 정선군수(도시과)

나.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6. 사업기간

가.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나. 준공예정일 : 2022.12.31.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8.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

● 토지조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공부	편입	주 소	성명	관계인	성명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1	정선읍 애산리	413-28	대	64	64		정선군			
2	정선읍 애산리	415-98	전	34	34		국(국토교통부)			
3	정선읍 애산리	413-29	대	87	87		정선군			
4	정선읍 애산리	415-99	전	82	82		정선군			
5	정선읍 애산리	413-7	철	4,051	13		국(국토교통부)			
6	정선읍 애산리	413-30	대	114	114		정선군			
7	정선읍 애산리	415-7	대	222	222		정선군			
8	정선읍 애산리	415-82	도	16	16		정선군			
9	정선읍 애산리	413-31	대	85	85		정선군			
10	정선읍 애산리	415-8	대	195	195		정선군			
11	정선읍 애산리	415-80	도	19	19		정선군			
12	정선읍 애산리	415-81	대	61	61		국(국토교통부)			
13	정선읍 애산리	413-32	잡	59	59		정선군			
14	정선읍 애산리	414-3	전	50	50		정선군			
15	정선읍 애산리	415-79	전	92	92		정선군			
16	정선읍 애산리	413-33	대	94	94		정선군			
17	정선읍 애산리	413-14	대	671	671		정선군			
18	정선읍 애산리	415-78	대	65	65	정선읍 북실리 746-6 미소빌아파트 309	정운봉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89-11 대치빌딩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	근저당권 설정
19	정선읍 애산리	413-34	대	117	117		국(국토교통부)			
20	정선읍 애산리	413-23	대	30	30		정선군			
21	정선읍 애산리	415-77	대	112	112		정선군			
계				6,320	2,282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2-859호

제282회 정선군의회(임시회) 부의 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제282회 정선군의회(임시회) 부의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8일

정 선 군 수

- 01. 정선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 02. 정선군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 03. 정선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04. 정선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 05.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06. 정선군 야생화마을 추리본부 민간위탁동의안

정선군 공고 제2022-860호

정선군 군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정선군군정소식지발행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7월 18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정선군 군정소식지 발행의 부합하지 않는 인용 조항등을 일괄 정비하여 소식지 발행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칭(제2조)

군정소식지의 명칭은 “아라리사람들”과 “아라리”로 한다.

나. 발행(제3조)

아라리사람들은 매월, 아라리는 반기별로 발행

다. 게재내용(제5조)

제2호를 삭제

제8호 신설 - 성평등, 인권감수성, 사회통합(다문화수용 등)등 시민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라. 명예기자(제7조)

성별, 연령 등의 대표성을 고려

마. 보상(제9조)

“소식지의 퀴즈 등에 참여하여 당첨된”을 “독자마당 등에 참여할”로 개정

3. 의견제출

- 해당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7일(2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홈페이지, 이메일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기획관)
- 전 화: 033-560-2224
- 팩 스: 033-560-2592
- 이 메 일: twin0624@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군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군정소식지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군정소식지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군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를 “군정소식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명칭) 군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아라리사람들”과, “아라리”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매월 1회”를 “아라리사람들은 매월, 아라리는 반기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소식지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 SNS,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병행 홍보할 수 있다.

제5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성평등, 인권감수성, 사회통합(다문화수용 등) 등 시민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성별, 연령 등의 대표성을 고려한다.

제9조제2항 중 “소식지의 퀴즈 등에 참여하여 당첨된”을 “독자마당 등에 참여할”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알권리 충족을 통하여 군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올바른 주민자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정선군 <u>군정소식지(이하 “소식지” 라 한다)</u>의 제작·배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 ----- ----- ----- ----- -----</p>
<p><u>제2조(명칭) 소식지의 명칭은 “아라리사람들” 이라 한다.</u></p>	<p><u>제2조(명칭) 군정소식지(이하 “소식지” 라 한다)의 명칭은 “아라리사람들”, “아라리” 로 한다.</u></p>
<p>제3조(발행) 소식지의 발행인은 정선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로 하며, <u>매월 1회</u>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 회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p>	<p>제3조(발행) ① ----- ----- 아라리사람들은 매월, 아라리는 반기별 ----- ----- -----</p>
<p><u><신 설></u></p>	<p><u>② 군수는 소식지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 SNS,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병행 홍보할 수 있다.</u></p>
<p>제5조(게재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생략)</p>	<p>제5조(게재내용) ----- -----</p> <p>1.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2. <u>군보</u></p> <p>3. ~ 7. (생 략)</p> <p><u><신 설></u></p> <p>제7조(명예기자) ① 군수는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취재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군민명예기자(이하 “명예기자”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p> <p>②·③ (생 략)</p> <p>제9조(보상) ① (생 략)</p> <p>② <u>소식지의 퀴즈 등에 참여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u></p>	<p><u><삭 제></u></p> <p>3. ~ 7. (현행과 같음)</p> <p>8. <u>성평등, 인권감수성, 사회통합(다문화수용 등) 등 시민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u></p> <p>제7조(명예기자) ① ----- ----- ----- ----- ----. <u>이 경우 성별, 연령 등의 대표성을 고려한다.</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보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독자마당 등에 참여할</u> ----- ----- -----.</p>

정선군 공고 제2022-863호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년 7월 20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현행 「정선군 건축 조례」 상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개정 및 정부 합동평가 대비 자치법규 정비, 상위법으로부터 위임된 사항 등을 개선·보완하여 지역주민의 편익 도모, 행정의 신뢰도를 재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안 제1조)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을 추가
- 직위 정비 (안 제13조), (안 제14조)
 - 건축위원회 간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진행 담당공무원의 직위를 정선군 공무원 대외직명 운영 규정에 맞게 정비(담당→팀장)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산정 기준 명확화 (안 제17조)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산정기준을 「수도권정비건축법」 제14조제2항에서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공사 연면적을 곱한 금액의 1 퍼센트로 명확화
- 가설건축물의 조건을 추가하고, 용도별 면적을 세분화하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가능 횟수를 정함 (안 제19조)
 - 가설건축물 조건으로 “3층 이하일 것” 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에 적합한 경우” 를 추가하고,
 - 가설건축물의 용도별 규모를 세분화하며,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가능 횟수를 5회로 정함

○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 (안 제23조)

-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같은 기준’ 이라 한다)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을 준용하고, 당사자간 감리비용을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정함

○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안 제31조)

- “공원 안의 도로”,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사망 또는 행방 불명인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함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강화 (안 제36조)

- 정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아파트의 경우 건축물 높이의 3분의 2 이상 이격토록 정하고,
-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경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 거리의 1배 이하,
- 단지 내 두 동의 축이 남동에 남서방향일 때는 낮은 건축물의 1배 이하, 높은 건축물의 0.8배 이하로 정함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2. 7. 20. ~ 2022. 8. 8.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도시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도시과

- 연 락 처 : 전화(033-560-2474), 팩스(033-560-2596)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도시과
- 홈페이지 : <https://www.jeongseon.go.kr>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규칙에서 정선군 건축에 대하여 위임한” 을 “시행규칙,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담당주사가” 를 “담당팀장이” 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담당주사가” 를 “담당팀장이” 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치금의 산정에 필요한 건축공사비는 착공 신고일을기준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공사 연면적을 곱한 금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3층 이하일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할 것

제1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제2호, 제12호 및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경지 안에 설치하는 농막(農幕)으로서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것(「농지법」에서 정한 농막을 말한다)
3.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구조로 된 원예작물판매소 및 농산물판매소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4. 양어장 및 낚시터의 비가림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
5. 공장부지 안의 철골조립구조로 된 소규모 기계보호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주차장법」에 따라 신고를 마친 노외주차장에 합성수지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료로 사용된 차량보호용 건축물
9. 「농지법」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설치하는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농산물 간이저온저장고. 다만,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로 분류되는 농산물 저온저장고로서 지붕이 없는 완제품은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다.

10.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에 따른 시설물로서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것

제19조제2항제2호(중전의 제5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장부지 안의 소규모 폐기처리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

제19조제2항제2호(중전의 제5호) 단서 중 “한정한다” 를 “한한다” 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3호(중전의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노외주차장·체육시설에 경량구조로 된 관리사무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8제곱미터 이하인 것. 다만, 옥상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8. 경량구조의 방범초소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1. 공동주택 단지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1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내에서 문화행사, 체육행사 또는 식품판매(「식품위생법」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한한다)를 하기 위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천막, 컨테이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이고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가설 점포.

③ 영 제15조제7항에서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 는 5회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4항에서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이란 비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같은 기준’ 이라 한다)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 감리비용을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같은 기준 별표 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 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같은 기준 별표 5에 따른 공사비의 중간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_1 - \frac{(X-x_2)(y_1-y_2)}{x_1-x_2}$$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방도로 및 공원 안의 도로

4.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인 경우

제36조제1항제2호 중 “1이상” 을 “1이상.” 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아파트는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36조제4항제1호 중 “0.5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를 포함한다)” 을 “1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를 포함한다.)”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때에만 해당)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때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 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를 포함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4조 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것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생략)</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p> <p>가. ~ 마. (생략)</p> <p>바. 숙박시설 중 <u>관광숙박시설</u></p> <p>3. 「<u>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u>」 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p> <p>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으로서 그 규모가 <u>16층 이상이거나 300세대 이상인 건축물.</u></p> <p>5. (생략)</p> <p>② (생략)</p> <p><u><신설></u></p>	<p>제7조(기능) ① -----</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p> <p>-----</p> <p>-----</p> <p>가. ~ 마. (현행과 같음)</p> <p>바. ----- <u>관광숙박시설</u> <u>및 생활형숙박시설</u></p> <p><u><삭제></u></p> <p>4.-----</p> <p>-----</p> <p><u>15층 이상이거나 100세대</u> -----</p> <p>-----.</p> <p>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u>」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u>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u></p>

<신 설>

<신 설>

회 심의를 생략한다.

④ 강원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⑤ 위원회 심의에 따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용도지역·지구 및 토지이용계획과의 적정성
2. 도시기반시설과의 관계
3. 교통처리계획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계획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세부 심의사항에서 제외한다.
4.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5. 건축물의 용도·규모·배치 및 형태의 합리성
6. 건축구조의 적정성
7. 조경·공개공지 등 도시환경과의 적정성
8. 건축설비의 합리성 및 안정성
9. 방재계획의 합리성
10. 토지 굴착의 적정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제8조(구성) ① -----
----- 5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업무

2. ~ 5. (생략)

③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대행자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조사업무 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하고 군 내에 사무소를 소재한 건축사 중에서 군수가 선정한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명부에 등재된 순서에 따라 대행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원도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

-----.

1. 법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전 현장조사 업무

2. ~ 5. (현행과 같음)

③ -----

-----.

1. ----- 「강원도 건축 조례」 제29조에 따라 공개 모집된 명부의 -----
-----.

2. -----

----- 하며,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 대행자 지정은 다음 각 목에서

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3. ~ 6. (생략)

제2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법 제35조 및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2. (생략)

② ~ ④ (생략)

<신 설>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나. 제2항제4호의 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3. ~ 6. (현행과 같음)

제2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건축물로 하고, 검사 주기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며, 검사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1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

제28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제26조에 따른 대지 안의 조경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 이상의 교목을 60퍼센트 이상 심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는 낙엽수는 60퍼센트 이상을 유실수로 한다.

③ 기존수목(원시림을 포함한다)을 그대로 둘 경우에는 해당 면적의 2배까지 인정한다.

제3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② (생략)

③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1년에 1회로 하고, 단서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는 3회로 한다.

13조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한 건축물은 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8조(식재 등 조경기준) 제27조에 따른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 등 조경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다.

제3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80조제5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 는 1년에 1회로 한다.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선군 건축에 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시행규칙,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 -----.</p>

제13조(회의록 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생략)

② 협의회의 운영자는 건축허가처리부서장이 되고, 회의 진행은 협의회 주관부서의 담당주사가 진행한다.

③ ~ ⑤ (생략)

제17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생략)

②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예치하는 금액은 당해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에 의한 총공사 도급금액으로

제13조(회의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담당
팀장이 ----.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담당팀장이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예치금의 산정에 필요한 건축공사비는 착공 신고일을 기준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공사 연면적을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총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3. (생략)

③ (생략)

제19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 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계획시설 또는 군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3. 목조, 합석 등으로 구성된 간이구조물

급한 금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가설건축물)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3층 이하일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할 것

② -----

-----.

1. 농경지 안에 설치하는 농막(農幕)으로서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것(「농지법」에서 정한 농막을 말한다)

<삭제>

3.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구조로 된 원예작물판매소 및 농

4.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신 설>

5.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 다만,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6. 컨테이너 및 조립식구조와 유사한 구조로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신 설>

7. (생 략)

8. 올림픽대회를 위하여 해당 조직위원회에서 한시적으로 축조하는 대회관련 시설

산물판매소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4. 양어장 및 낚시터의 비가림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

5. 공장부지 안의 철골조립구조로 된 소규모 기계보호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공장부지 안의 소규모 폐기처리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

----- 한한다.

6. 노외주차장·체육시설에 경량구조로 된 관리사무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8제곱미터 이하인 것. 다만, 옥상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7. 「주차장법」에 따라 신고를 마친 노외주차장에 합성수지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료로 사용된 차량보호용 건축물

12. (현행 제7호와 같음)

8. 경량구조의 방법초소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신 설>

<신 설>

<신 설>

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내에서 문화행사, 체육행사 또는 식품판매(「식품위생법」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한한다)를 하기 위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천막 컨테이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이고 연면적 100제곱미터

9. 「농지법」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설치하는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농산물 간이저온저장고. 다만,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로 분류되는 농산물 저온저장고로서 지붕이 없는 완제품은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다.

10.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에 따른 시설물로서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것

11. 공동주택 단지내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1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내에서 문화행사, 체육행사 또는 식품판매(「식품위생법」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한한다)를 하기 위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천막, 컨테이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이고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

이하인 가설 점포.

<신 설>

<신 설>

하인 가설 점포.

③ 영 제15조제7항에서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 는 5회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

제23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4항에서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이란 비상주 감리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같은 기준’이라 한다)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 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 감리비용을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

(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같은 기준 별표 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같은 기준 별표 5에 따른 공사비의 중간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1 - \frac{(X-x2)(y1-y2)}{x1-x2}$$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

제31조(도로의 지정) -----

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생략)
- 2. 제방도로
- 3. (생략)

<신설>

제3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 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야 한다.

- 1. (생략)
-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 1이상 <단서 신설>

②·③ (생략)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현행과 같음)
- 2. 제방도로 및 공원 안의 도로
- 3. (현행과 같음)
- 4.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인 경우

제3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

- 1. (현행과 같음)
- 2. -----

----- 1
이상. 다만, 아파트는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
 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
 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를
 포함한다)

2. 남쪽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
 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
 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
 물 각 부분 높이의 0.4배 이상
 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
 의 0.5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
 의 경우를 포함한다)

1. -----

 ----- 1배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를 포
 함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
 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
 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
 서 방향인 때에만 해당)의 건축
 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
(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
 의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
 하는 때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
 분 높이의 0.8배 이상, 낮은 건
 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를 포
 함한다.)